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규격**"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의 구조·성능·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2. "**제작규격**"이란 소방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주문생산방식 품목의 주문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장비의 기본적인 사양 및 성능을 포함한 요구조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규격**과 주문규격으로 구성된 규격을 말한다.
3. "**기본규격 관리체계**"란 **기본규격**의 적정한 제정·개정·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말한다.

제3조(기본규격 구성체계) ① **기본규격**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일반·구조기준 : 장비의 구성요소, **주요 사용** 장치의 위치 등 소방기관에서 현장 사용상 통일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준
2. 성능기준 : 장비사용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장비의 유효작업 능력 또는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말하며, 인장강도·충격강도·내열성 등 물리적 기준과 기능성·안전성·경제성·내용성·편의성 등 각종 성능에 대한 기준

3. 시험방법 : 장비에 요구되는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시험방법

②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비의 성능기준, 시험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관리에 대한 **기본규격** 및 제작규격 중 주문규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기본규격 작성원칙) 기본규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특성, 국내 생산 및 시험인증 가능여부, 현장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내·외 및 국제기구에서 사용기준·규격 등의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우수 안전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제5조(기본규격 관리체계)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1. **기본규격**(안)의 작성

가.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통하여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는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2. 공청회 등 의견수렴
3.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4.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5.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② 제작규격 중 주문규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7조 2항에 따른 소관부서장이 장비 구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작성·관리한다.

제6조(기본규격의 사후승인) ① 소관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나 장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시급히 소방장비의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기본규격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작성·시행한 경우 사후에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본규격의 관장)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장비 중 소방자동차(구급차 제외) 및 보호장비 : 장비총괄과
2. 화재진압장비 : 화재대응조사과
3. 구조장비 : 구조과

4. 기동장비 중 구급차 및 구급장비 : 119구급과

5. 그 외의 장비에 관한 소관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장비총괄과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

2.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관리·감독

3.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4. 영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본규격**의 관보 고시

6. 제10조에 따른 **기본규격** 관리대장 등록

④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지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의 제안

가.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 수요조사

나. **기본규격**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장활동 가능성 검토

2. 개발된 **기본규격**의 운영

3. 그 밖에 **기본규격** 개발을 위해 총괄부서가 요청한 사항

제8조(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4항의 대행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기본규격의 규격번호 표기)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규격서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본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관리대장에 **기본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사업대상 선정

가.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

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

2. **기본규격** 개발 사업계획 수립

3. **기본규격** 개발사업 추진

가.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나. **기본규격**의 작성

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12조(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하여 규격안을 작성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규격**의 개발 개요
2. **기본규격** 개발의 추진 체계·방법 및 일정
3. **기본규격**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4. 그 밖에 **기본규격** 개발에 필요한 계획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개정 등)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을 위해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및 구성 및 표기(제9조 관련)

1. 기본규격 번호의 구성

가. 장비의 명칭

나. 장비종류

다. 일련번호 : 규격의 제정 순서에 따른 표기

라. 제정 또는 개정년도

마. 해당 연도 개정횟수 : 01, 02, 03 등으로 표기한다.

2. 기본규격 번호의 표기

규격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비의 명칭	-	□	-	□□□□	-	□□□□	-	□□
		↓		↓		↓		↓
		장비종류		일련번호		제·개정년도		개정횟수

<비 고>

1. "장비의 명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분류 중 품목상 명칭을 말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이나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2. "장비종류"는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번을 부여한다.

: 기동장비 1, 화재진압장비 2, 구조장비 3, 보호장비 4, 소방장비의 구성품 5, 소방장비 관리 6

3. 작성예시 : 경형펌프차 01 - 0001 - 2020 - 01

: 첫 번째로 제정된 경형펌프차의 기본규격으로 2020년에 1회 개정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기본규격번호					
장비명					
제정일			제정담당자		
개정내역	차수	개정일	개정내용		담당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폐지일					